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별표 2 제2호의 바목을 사목으로, 사목을 아목으로,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 사목의 근거법령란 중 “제1항제6호”를 “제1항제6호의2”로 한다.

바.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6호	이전·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		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	--

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■ 항만법 시행규칙 [별표 2]						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			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			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
< 신 설 >	< 신 설 >	<신설>			바.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6호	이전·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		
바.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6호	경고	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	허가취소	사. -----	법 제83조 제1항제6호의2	-----	-----	-----
사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7호	경고	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	허가취소	아.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아.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	법 제83조 제1항제8호	경고			자.-----	-----	-----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항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 서식] 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제 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행정처분 통지서</td> </tr> <tr> <td>사업시행자 (피허가자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주소</td> <td>(전화번호:)</td> </tr> <tr> <td>행정처분 내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등의 기간</td> <td>년 월 일 로부터 개월</td> </tr> <tr> <td>행정처분 사유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 </td> </tr> </table>	제 호		행정처분 통지서		사업시행자 (피허가자)		주소	(전화번호:)	행정처분 내용		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등의 기간	년 월 일 로부터 개월	행정처분 사유		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		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제 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행정처분 통지서</td> </tr> <tr> <td>처분대상자</td> <td>(예시) (주)삼호선박</td> </tr> <tr> <td>주소</td> <td>(예시)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665 XXX호 (전화번호: 051-XXX-XXXX)</td> </tr> <tr> <td>위반행위</td> <td>(예시) 「항만법」 제41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해 항만시설을 사용</td> </tr> <tr> <td>처분 내용</td> <td>(예시)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무단사용 중인 삼호2호(호출부호 : XXXX)를 이동하거나 제거하고,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원상회복할 것</td> </tr> <tr> <td>처분 기간 (기한)</td> <td>(예시) 2027. 6. 12. (토) 24:00까지</td> </tr> <tr> <td>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</td> <td>(예시) 「항만법」 제83조제1항제6호 및 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1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 </td> </tr> </table>	제 호		행정처분 통지서		처분대상자	(예시) (주)삼호선박	주소	(예시)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665 XXX호 (전화번호: 051-XXX-XXXX)	위반행위	(예시) 「항만법」 제41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해 항만시설을 사용	처분 내용	(예시)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무단사용 중인 삼호2호(호출부호 : XXXX)를 이동하거나 제거하고,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원상회복할 것	처분 기간 (기한)	(예시) 2027. 6. 12. (토) 24:00까지	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	(예시) 「항만법」 제83조제1항제6호 및 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1항	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	
제 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처분 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시행자 (피허가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소	(전화번호: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처분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등의 기간	년 월 일 로부터 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처분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 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정처분 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처분대상자	(예시) (주)삼호선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소	(예시)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665 XXX호 (전화번호: 051-XXX-XXXX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(예시) 「항만법」 제41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해 항만시설을 사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처분 내용	(예시)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무단사용 중인 삼호2호(호출부호 : XXXX)를 이동하거나 제거하고, 부산항 제X부두 X번 선석을 원상회복할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처분 기간 (기한)	(예시) 2027. 6. 12. (토) 24:00까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	(예시) 「항만법」 제83조제1항제6호 및 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1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항만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함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()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직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